#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 안 자 : 성주군수

2. 개정이유
   ○ 수출을 통한 안정적인 판로 및 우리군 농산물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본청과 직속기관의 정원을 조정하여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본　　청 정원 조정 : 299 ⇒ 301명(증 2명)
   ○ 직속기관 정원 조정 :  92 ⇒  90명(감 2명)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직급별 정원) 및 제30조(정원의 규정)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규제심사 : 해당 없음
   ○ 성별영향평가 : 제외대상(「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제2조제2항제3호)
   ○ 입법예고 : 제외대상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우리군 특산물인 참외를 비롯한 농산물 수출 증대를 통한 안정적인 판로 및 우리군 농산물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그 기능을 강화하고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본청과 직속기관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별표3] 성주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에서 전체 정원(591명)의 변동 없이 본청과 직속기관의 일반직 6급 상당이하 정원을 조정하여 본청(농정과) 정원을 당초 299명에서 301명으로 2명 증원하고, 직속기관(보건소) 정원을 당초 92명에서 90명으로 2명 감원한 것입니다.
   ○ 검토결과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자치입법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 농산물 수출관련 업무 강화와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